내부감사인의 독립성· 전문성과 감사성과와의 관계

-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중심-

2020. 12.

김광영



[학력]

- 1986년 전북대학교 경영학과(경영학사)
- 2002년 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 석사(리더십 전공)
- 2019년 동국대 행정학 박사 (감사 전공)

[경력]

- [現]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상근감사위원
- [現]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(비상근)
- [現] 동국대 행정학과,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
- [前] 감사원 행정심판 위원
- [前]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장
- [前]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직대
- [前]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(보건복지부 담당)
- [前]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(코레일 등 담당)
- [前]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4, 5과장 (국세청 담당)
- [前] 감사원 감찰담당관 (자체감사 업무 담당)
- [前] 감사원 인사운영팀장
- 1986년 감사원 입사, 2018년 명예퇴직(31년 7개월)

목차

* 공공감사(公共監查)에 대한 일반

1. 연구 배경 및 목적

2. 공공감사 및 자체감사란

3. 연구 변수 및 연구방법

4. 연구결과 및 시사점

감사(監査)에 대한 일반

감사 목적 및 감사 효과

〔監査 目的〕

각 기관이 정해 놓은 각종 규정, 지침, 계획 등이 **제대로 作成**되었는지?,

그렇다면 구성원들이 이를 **제대로 遵守**하고 있는지에 대해 **점검**

- 즉, **내부통제**가 제대로 **確立**되었는지, **내부통제**가 제대로 **履行**되고 있는지?

➢ 〔내부통제 개념〕 조직의 자산을 보호,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, 조직경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조직이 수립 채택한 계획, 규정, 절차 및 수단등 일련의 통제과정을 의미

〔監査 效果〕

내부통제 미비점은 **改善 補完하여 豫防 및 行政 效率性 등 달성**

내부통제 미 준수자에 대한 **懲戒, 注意 등**을 통해 **再發 防止 등 도모**

➡ 감사를 통해 건강한 조직, 내부통제가 확립된 조직을 만든다.

내부통제가 무너진 사례

Y시 기능직 8등급 직원, 세출금 80억 횡령



회삿돈 370억원 횡령해 유흥비 탕진한 회사원 구속



서울 마포경찰서는 10여년간 회삿돈 약 370억원을 빼돌린 A(51)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. 광고업체 에이치에스애드의 지배회사 지투알에서 재무를 관리하던 A씨는 2008년~2019년 사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.

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해 허위 채무를 만든 뒤, 회삿돈으로 채무를 갚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. 경찰은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금지 조치가 된 것을 파악하고 부산 등 지방으로 도주한 A씨를 지난 11일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.

370억 횡령해 유흥비로 펑펑 쓴 회사원(19.6.19)



S시 이동민원실 직원, 수수료 횡령



C시 직원 나랏돈이 쌈짓돈, 제 돈처럼 사용



우리나라 공공감사에 대한 일반

우리나라 공공감사체계 구조

감사대상 감사기관	국회	감사원	중앙행정 기관	지방 자치 단체	공공 기관	감사근거규정
국회		√	√	√	√	헌법 제61조, 국회법 제127조,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
감사원		자체 감사	√	√	√	헌법 제97조, 감사원법 제22조-제24조, 공운법 제52조
중앙행정 기관			자체 감사	√	√	공공감사법, 지방자치법 제167조 등
지방자치 단체				자체 감사	√	지방자치법 제 171조, 지방공기업법 제 3조 등
공공기관					자체 감사	공공감사법, 공운법 제32조,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, 자체감사규정 등

자료: 심호(2013), 『자체감사와 조직역량』

우리나라 공공감사 법규 체계

감사원법」

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중앙행정기관,지자체,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「지방자치법」

국가사무나 시·도사무 처리의 지도·감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근거를 규정

「공공감사기준」(감사원 규칙)

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

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」(감사원규칙)

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

「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감사기준」(기획재정부 지침)

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기준, 감사업무 절차 및 감사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

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(대통령령)

주무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시·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

자체감사규정 등

각 기관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자체감사시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

자체감사규정 등

각 기관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자체감사시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

세부감사규정 등

각 기관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시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

공공감사기준 및 공공감사법 일반

1. 공공감사기준: 감사원 규칙 제137호, 1999.8.28.

- 공공부문 감사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규정(감사원법 제30조의2 등 근거)

*** 공공감사기준 제8조(독립성)**

❖ 공공감사기준 제8조 (독립성) 제1항 :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* 공공감사기준 제9조(전문성)**

❖ 공공감사기준 제9조 (전문성) : 감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구비, 전문감사인 확보, 지속적 교육 훈련 실시, 외부 전문가 활용 등

2.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(공공감사법): 2010. 7.21.시행

-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 내실화와 공공감사의 효율화를 위해 제정

*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, 감사 실효성 확보 등 규정
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(2010.7.1.)

목적 → 내부통제 내실화와 공공감사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공공감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 확보

내부통제 내실화

- 자체감사기구의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독립성, 전문성 등 확보
- 감사결과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자체감사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
- 감사실시, 보고, 처리 등 감사절차를 표준화하여 자의적 감사처리를 방지

공공감사 효율화

- 감사활동 조정협의회 등 공공감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협력체계에 관한 규정
- 감사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감사를 금지하고 감사원과 감사계획을 사전 협의 의무화
- 감사원에 자체감사 지원과 공공감사체계 개선에 대한 책임 부여

공공감사법 상 감사기준 세부사항

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	- 자체감사기구의 의무적 설치 조항(제5조, 제6조) -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보장 조항(제7조, 제28조) - 자체감사기구 장의 개방형 직위 임용 등 조항(제8조, 제9조) - 자체감사기구 장의 임기 내 신분보장 조항(제10조) - 자체감사기구 장의 적정한 직급 부여 조항(제14조) 등
자체감사의 전문성 확보	- 감사담당자의 임용 및 자격요건 조항(제16조) - 결격사유 조항(제17조) - 근무성적평정 등 우대 조항(제18조) -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조항(제27조) - 감사전문교육 지원 조항(제38조) 등
자체감사의 실효성 증진	- 감사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활동 및 감사결과처리 필수 권한 조항(제20조, 제23조, 제24조, 제41조) - 감사절차 등 표준화 조항(제19조, 제21조, 제22조, 제37조)9 - 재심의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와 감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한 감사품질 확보 조항(제25조~제27조) 등

자료: 공공감사법의 독립성 전문성 실효성 조항을 발췌 정리

공공감사법 적용 대상기관 현황

○ '18년 12월 현재 **642개 기관**(중앙부처 46, 지자체 258, 공공기관 338)

– 전담기구는 429개 기관 설치, 개방형 책임자는 482개 기관 임용

구분	전담기구(%)	개방형책임자(%)	감사기구 종사 인원(명)
중앙행정기관(46)	35(78%)	35(76%)	3,480
지방자치단체(258)	128(50%)	109(42%)	4,141
공공기관(338)	266(78%)	338(100%)	2,734

* 자료: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사이트(www.pasa.go.kr)에 매년 고시

- 총 642개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종사 인력은 1.1만여 명 근무 중
- 감사원법 적용대상기관은 현재 6만 6천여 개, 공공감사법 적용기관은 그중 642개 임

• 지자체 전담기구설치: 「지자체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시·도, 30만 이상 시·군·구, 시·도교육청에 전담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 (10. 7. 1. 시행)

*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은 적용대상 제외(공공감사법 제2조)

내부감사인의 독립성 · 전문성과 감사 성과와 관계

-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중심-

1. 연구 배경 및 목적

- 공공감사는 감사원 감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로 구분
  - 그러나 감사원 감사는 인력 등의 한계로 모든 부문에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 (인력 1천여 명, 감사대상기관 6만 6천여 개)
  - 한편, 그동안 자체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음

자체감사에 대한 그동안 평가: 온정주의 감사, 제식구 감싸기,솜방망이 처벌 등

- 이러한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원은 2010. 7. 1.부터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공공감사법'이라 함)을 제정하여 시행, 10년째를 맞이함

➡ 이에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의 확보를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적 장치(요소)가 감사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감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

1. 연구 배경 및 목적

- 금번 연구는 **지방자치단체(교육지자체는 제외) 감사기구**를 중심으로 살핌

[지자체 대상 선정 사유]

①지자체 예산규모가 중앙정부의 60%인 313조 상당(선심성예산 집행 규모 증가 등)

②자체감사기구가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성 등 유지 곤란, 감사활동미흡, 평균 30개월 근무)

③지자체 공무원 공금횡령 사례 지속 발생 및 증가(C시 12억, D시 3억 등)

-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**여타 감사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**, 연구 분석을 통해 **시사점 제시** 필요

➡ 이를 위해 **독립성** 확보와 **전문성** 제고를 위한 **제도적 장치(요소)**들이 자체감사활동 결과물인 **감사성과에 미치는 영향**과,

➡ 또한 추가적으로 자체감사책임자와 감사담당자의 **인구통계학적 특성**에 따라 **독립변수**(독립성 · 전문성), **종속변수**(감사성과)에 대한 **인식 차이**가 있는 지 등을 분석, **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운영의 시사점을 제시**

2. 공공감사 및 자체감사의 검토

가. 공공감사 및 자체감사의 정의

◎ 공공감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"관련 법규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감사 주체 [즉, 감사원 및 각 중앙정부 · 지자체 ·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기구 등]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의 제반체계, 정책 및 사업 ·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해 기준 및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행위

◎ 현행 공공감사법에서 자체감사란 "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[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] 및 그 기관에 속한 모든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. 점검. 확인. 분석.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" 정의

나. 공공감사의 기능변화?







사냥개(Catch dog)

- 적발 감사

감시견(Watch dog)

- 상시 감사
- GAO : congressional watchdog
- Watch dog는 18세기 영국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가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언급

안내견(Guide dog)

- 성과 감사
- 컨설팅 감사

3. 연구 변수

1. 독립성 · 전문성에 대한 검토: 독립변수

현행 공공감사법 및 공공감사기준(감사원 규칙, 1999년 제정시행)에 보면 **감사인이 감사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준거**(minimum standards)인 **감사기준**으로서 독립성, 전문성 등을 제시

독립성이란 '감사기관과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등 외관상의 독립성(independence in appearance)이 포함하는 것'을 의미(공공감사기준 제8조)

➡ 본 연구는 **독립성을** "감사계획수립부터 감사결과처리까지 자율성이 보장되고,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및 인력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며, 기관장(경영진)이나 외부기관(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)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으로" 정의

3. 연구 변수

- 전문성이란 '감사인(자체감사책임자와 소속 구성원)이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' 을 의미(공공감사기준 제9조)

➡ 본 연구는 전문성을 "감사조직(감사책임자와 소속 구성원) 은
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,
감사대상기관의 현황 및 업무를 잘 알며,
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기회가 주어지고,
감사수행을 위한 적절한 감사방법론 및 도구(통계프로그램 등)를
활용하며,
감사결과보고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수준 확보" 로 정의

3. 연구 변수

2. 감사성과에 대한 검토: 종속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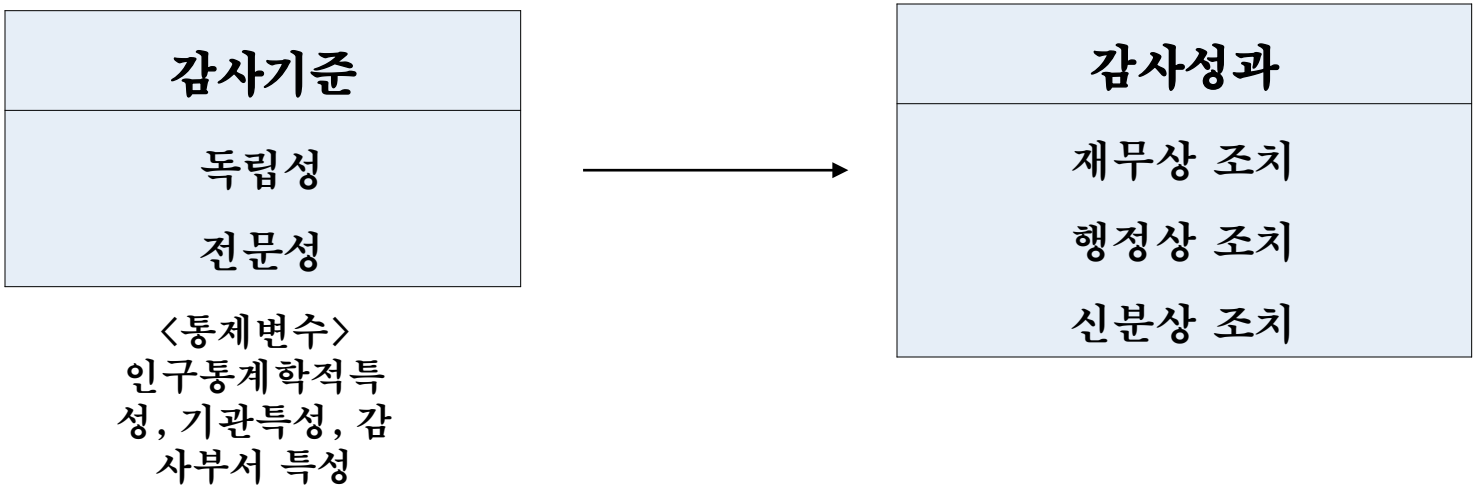
- 감사성과의 정의를 '감사를 통해 발생되었거나 향후 발생할 바람직한 방향' 으로 정의

➡ 금번 연구는 감사성과를 공공감사법 제39조에 따라 감사원이 매년 자체감사기구의 연간 감사활동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감사성과로 평가 중인 재무상 조치, 행정상 조치, 신분상 조치 실적으로 한정하여 검토

- 재무상 조치는 자체감사기구의 연간 감사활동결과에 따라 변상, 환수, 감액 등 자체감사기구의 금액상의 감사 처분결과를 의미
- 신분상 조치는 자체감사기구의 연간 감사활동결과로서 담당 직무를 위법·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직무감찰활동 결과 위법을 저지른 관련 행위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, 감봉, 견책, 경고 및 주의 등으로 감사 처분하는 것을 의미
- 행정상 조치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결과에 따라 규정이나 제도, 정책, 사업 등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이나 개선 또는 권고 등의 감사 처분하는 것을 의미

3. 연구 방법

가. 연구모형



나. 분석 대상(가설 등 설정)

1) 독립성 · 전문성이 감사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(다중회귀분석)
2) 감사책임자와 감사담당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, 기관특성, 감사부서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(독립표본 T-test, 일원변량분석)

다. 자료의 수집 및 분석

- 금번 연구에서는 공공감사법 제39조에 따라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 심사 대상인 **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** (본 연구에서 교육 자치단체는 제외함) **중에서 64개 기관 (17개 광역, 47개 기초) 을 선정**하여 분석

- 감사원이 2018년도에 자체감사활동 심사를 위해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한 84개 기관 중 64개 기관(17개 광역자치단체, 27개 시, 20개 구)을 대상으로 자체감사책임자와 감사담당자(구성원) 10여 명씩 총 689매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(지역별 區 숫자 분포를 고려,선정하여 대표성 부여)

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

설문조사기관	기관수	응답자		
		계	감사책임자	감사담당자
계	64	689	56	633
광역자치단체	17	242	16	226
기초자치단체	47	447	40	407

4. 연구결과 및 시사점

○ 본 연구의 의의 종합

- 최초로 독립성 · 전문성의 감사기준과 감사성과와의 관계 등에 대해 감사책임자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

- 아울러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에 종사중인 감사책임자와 감사담당자들을 상대로 독립성 · 전문성의 감사기준과 감사성과 등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을 실시

➡ 자체감사기구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음

4. 연구결과 및 시사점(계속)

- **첫째, 독립성과 전문성의 감사기준이 감사성과에 유의미한 정(+)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**

➡ **독립성 확보에 긴요한 감사전담기구 설치대상(현재기준: 광역시 · 도, 인구 30만 명 이상 시 · 군 · 구)을 점진적으로 확대 필요**

* 감사전담기구설치: 18년 12월말 기준 지자체 243개 중 163개 기관에 설치

➡ **아울러 감사원은 감사활동 실적이 부진(미진)한 자체감사기구를 상대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(대책)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이행을 독려할 필요**

➡ **감사담당자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직렬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**

* 감사직렬제 도입 운영: 제주특별자치도가 14년 12월 최초로 7급 3명 채용 (현재는 12명이 근무 중)

4. 연구결과 및 시사점(계속)

- 둘째, 감사책임자의 임용방식(외부, 내부)에 따른 독립성 · 전문성과 감사성과 등에 대한 인식차이를 감사책임자 및 감사담당자를 상대로 분석한 결과, 둘 다 외부 민간인 임용의 경우가 내부 출신 공무원보다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➡ 현행 공공감사법의 자체감사책임자 개방형 임용취지에 맞게끔 내부 출신 공무원 임용보다 외부 전문가 위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활동종합대책(감사원)에 이를 반영하는 등 적극 유도할 필요

- 감사책임자 개방형 임용 및 외부 민간인 임용 현황: 17년 12월말 기준 감사전담 기구 설치 163개 기관 중 145개(88%) 기관이 개방형 직위로 임용,
- 그 중 145개 외부 임용률을 보면 광역 지자체는 31%(5/16명), 기초 지자체는 18%(15/80명)

4. 연구결과 및 시사점(계속)

- **셋째, 자체감사기구 설치형태[합의제, 독임제]에 따른 독립성 · 전문성과 감사성과 등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, 둘 다 합의제[감사위원회] 가 독임제[1인 감사[담당]관]]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성 · 전문성의 감사기준과 감사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**

➡ **단체장 등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등이 어려워 단체장 등에 대한 견제와 책임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임제 보다는 합의제 기구 형태로 운영되도록 자체감사기구 설치형태를 합의제 감사기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(* 공공감사법상 합의제 설치 근거조항 有)**

* 자체감사기구 합의제 설치 현황: 2018년 말 기준, 합의제 형태 운영기구는 서울특별시 등 7개 기 관(제주, 광주, 충남, 세종 등 5개 광역시, 아산시, 대전광역시 서구 등 2개 기초 지자체) 에서 운영 중

4. 연구결과 및 시사점(계속)

- 넷째, 실제 감사실시 범위 등에 따른 독립성 · 전문성 등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, 본청과 산하[소속]기관을 같이 감사하는 경우가 산하[소속]기관만, 본청만을 감사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성 · 전문성과 감사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➡ 자체감사기구가 감사실시 범위를 결정할 때 하급기관인 산하[소속]기관만 감사하지 않고 본청에 대해서도 감사를 적극 실시하도록 자체감사 활동 실적 심사시 인센티브 차등 부여 등의 유도 방안 마련 필요

* 2017년 말 기준 본청 감사 실시현황: 광역은 270개 종합감사를 실시(그중 본청감사는 5.2% 인 14개 사항만), 기초는 283개 종합감사를 실시(그중 본청 감사는 12%인 34개 사항만 실시)

4. 연구결과 및 시사점(계속)

- 다섯째, 감사담당자의 **자체감사기구 근무연수에** 따른 감사기준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, 자체감사기구에 **오래 근무할수록**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➡ 따라서 현행 **감사담당자 우대**내용을 규정한 공공감사법 제18조[감사담당자의 우대]의 **조항을 '할 수 있다' 는 임의 조항에서 '우대 한다' 또는 '우대하여야 한다' 등 강행 규정으로 개정**할 필요

➡ **인사가점, 희망보직제 등 우대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유도**할 필요

감사역량이 뛰어난 감사관이 있을 때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.

* 감사담당자 근무기간: 공공감사법 적용대상기관(642개)의 감사담당자 **평균 근무기간은 31.8개월**(국가기관 32.2개월, 공공기관 33.8개월, 지자체의 경우 광역은 31.4개월, 기초는 29.1개월) 근무하다 타 부서로 전보

** ①인사가점제도 운영 : 지자체 47%, 공공기관 67%, 국가기관 91%
②전보시 희망보직제도 운영 : 지자체 72%, 공공기관 90%,국가 기관 27%
③감사수당지급 : 지자체 96%, 공공기관 74%, 국가 기관 94%

[참고문헌]

1. 국내 문헌

감사원 (2000).「공공감사기준 주석서」

감사원 (2011).「201년 감사연보」

감사원 (2012).「자체감사 통합 매뉴얼

감사원 (2014).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이해」

감사원 (2013).「재정누수관련 취약분야 비리 점검」, 서울: 감사원.

김광영 (2011). "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",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, 석사학위 논문.

김광영 · 곽채기 (2017).「 공공부문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연구, Y시등 공금횡령사건을 중심으로」,「사회과학연구」제24권 제4호 107-140.

김광영 (2019). "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감사성과에 미치는 영향" – 감사책임자의 리더십 조절효과를 중심으로,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과, 박사학위논문

[참고문헌]

김광영 · 주창범(2019). 「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이 감사성과에 미치는 영향」,「한국부패학회보」제24권 제3호 49-72.

2. 국외문헌

Gul, F. A.(1989). “Banker’s perceptions of factors affecting auditor independence”. Accounting, Auditing and Accountability Journal, 2(3).

IIA. (2014). “IA Magazine & Featured Articles”.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; II.

IESBA. (2007). “Global Ethics Board Consults on Professional Skepticism”. 2007.

Be Happy

감사합니다!

